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종교와 영성의 문제

이 혜숙(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I. 서론

오늘날 사회복지실천에서 종교의 입지를 제대로 짚어야 할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와 종교가 선교¹⁾라는 목표점에서 충돌하는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극단적인 사례는, 아프간에서 있었던 한국교회 봉사자들의 피랍사건일 것이다. 그들은 국제구호를 목적으로 지원한 것이라지만 종교적 사명이 계기였다는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의 개화기에도 기독교는 해외 지원단의 사회사업, 학교, 병원을 통해서 특수선교 사업에 진력하였다. 문제는 단지 외래종교의 팽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전통종교나 문화와의 관계를 주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강요받기 때문에 문화주체의식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복지활동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 경우, 선교지는 수혜자에 비해서 문화적 우월감을 갖게 되고 결국은 종교적 우월주의²⁾로 확산되는 것이다.

국내에도 외국인 이주민이 100만 명에 달한 시점이고, 종교계의 해외 지원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사회복지사(기관)는 국내,외에서 만나게 될 서비스 이용자들의 다양한 종교와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기술들을 훈련받아야 한다. 이 점은 불교계 사회복지사업도

1) '선교'는 특정교단에서 주로 쓰는 용어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포교, 전도 등을 아우르는 통칭으로 사용함.

2)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권2(서울: 집문당, 1988), 272-273쪽.

예외가 될 수 없다.

한편, 종교계 사회복지와 정치의 지나친 밀착을 경계해야 한다. 지난 IMF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종교계의 복지역량에 더욱 큰 기대를 갖게 된 것은 사실이다. ‘Seed Money’라고는 하지만 막대한 공공자원이 종교계 복지사업에 지원되고, 신규 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코자 공모하는 경우에도 종교계 지원 업체를 흔히 더 신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가 종교계 사회복지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해당 종교(기관)를 지원하는 결과가 된다면, 명백히 정교 분리의 헌법적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선교조건부 사회복지나 정치조건부 사회복지와 같이, 비록 사회복지와 종교가 본래의 역할을 벗어나서 부정적으로 결합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제라도 더욱 올바른 상호관계를 정립해 갈 수 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종교계의 물질적 기여가 크다는 점 이외에도, 종교는 여전히 일반인의 삶에 의미 있는 심적 자원이다. 예컨대, 국민들의 현재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을 보면 종교인이 비종교인보다 ‘만족’ 비율이 높고 ‘불만족’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 사회복지학에서 인간의 ‘영적(spiritual) 속성’이 커다란 강점(Strength)이라고 보는 시각과도 통하는 바이다.

종교란 어떤 믿음이 일정한 체제로 조직화된 것으로서, 궁극적 실재에 대한 경험과 그 힘(power)에 대한 각성과 기능적 실천·수행관 등등⁴⁾의 내용구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에 비해서 영성이란, 모든 인간에게 내재한 본연의 자기초월성과 세계와의 상호연관을 깨닫는 성품⁵⁾ 등으로 설명되고 비종교적

3) 통계청, 「2006사회조사통계」(2006), 26쪽. <http://www.kosis.kr> 사회통계>사회참여에서 자료 확인.

4) 윤이흠·김장태·이은봉·김중서·윤원철·서영대·김용환 공저, 『한국인의 종교관 II: 한국인의 종교적 관념연구』(서울: 서울대종교문제연구소, 1995), 122쪽.

5) enlightenment of reciprocal nature, transpersonal state, interrelatedness, interdependence 등 다양. Sadey L. Logan, “Critical Issues in Operationalizing the Spiritual Dimension of Social Work Practice,” *Spirituality and Social Work Communicator* 1(1990), 7쪽; David S. Derezotes, *Advanced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London: Sage, 2000),

인 신심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종교와 영성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지만, 서로 깊이 관련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기도 한다. 인간의 종교적·영적 속성에 대한 관심이 완전 새로운 등장은 아니겠으나, 사회복지에서 이런 관점을 중시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서비스 이용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이유에서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의 선교·정치적 지원·영성중시의 경향 등을 종합해볼 때 우리 사회복지계에 시급히 필요한 대책은 ‘종교 다양성과 영성 이해의 교육’에 있다. 본론은 먼저 사회복지실천에서 종교적 자유와 종교적 관여를 포함하는 ‘종교 이해’가 왜 필요한 것인지, 그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법·교육·실천의 세 가지 측면에서 기술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원과정의 (현역 혹은 예비) 사회복지사들에게 종교와 영성에 관한 인식과 기대를 물을 것이다. 그들의 응답을 분석하여,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교육과정에 특히 종교계 사립대학들의 사회복지교육에 필요한 변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 관련법에서의 종교

종교와 관련한 법적인 규정을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인간본연의 갖가지 권리와 자유를 종교로 인해서 차별 받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개개인이 종교자체를 자유로이 선택하고 행사하는 것이다. 그 중에 개인으로서 종교를 믿거나 혹은 믿지 않을 자유와 권리는,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문화에 동참 혹은 불참을 선택하는 자유

와 권리로 확대된다. 종교와 그 활동에 관한 자유 및 권리는 소위 사회적·문화적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인권개념에서는 주로 기본적인 생명권이나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와 같은 시민적·정치적·경제적 권리가 우선시되었고, 사회문화적 권리는 “2급 권리들로서 시행이 가능하지 않은, 재판에 회부될 수 없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점진적으로만 이행될 수 있는 권리로 간주되어온 경향이 있다. 이런 관점은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이라는 세계 인권체계의 기본원칙을 간과한 것”⁶⁾이다.

1948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제2조와, 1966년에 채택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2조 2항 등에서는, 종교로 인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⁷⁾. 여기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란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엄을 지키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롭게 기본적 생활을 할 생명권이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면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자유를 의미한다. 만인에게 평등한 복지권인 것이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도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혹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종교를 표명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동1항). 그런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점은, 우리가 것처럼 자유롭게 선택한 종교라 할 지라도 그것이 타인을 차별하거나 적의와 폭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면(동20조2항), 타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종교적 자유나 그 행위가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18조3항)⁸⁾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34조1항)와 행복을 추구할 권

6) 국가인권위원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유엔인권해설집개정판(서울: 인권위, 2005), 11쪽.

7) 정인섭 편역, 『국제인권조약집』(서울: 도서출판 사람생각, 2000), 14쪽.

8) 정인섭,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서울: 도서출판 사람생각, 2000), 220-221쪽.

리(10조), 법 앞에 평등하고 종교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권리(11조1항), 종교 자유 및 정교분리(20조1,2항) 등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조항들은 사회복지사업법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관련 법제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즉,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복지권에는 개인이나 집단이 종교를 선택하고 표현할 자유가 포함됨과 동시에 그 종교로 인한 어떤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가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자는 물론이고 사회복지사(기관) 역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종교를 선택하고 행사할 자유와 권리가 있는 것이다. 다만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종사자(기관)가 특정한 종교를 표명하는 것이 서비스 이용자의 기본적 권리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때, 그 행위는 제한받아야 마땅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뀌 말해서 만약 사회복지사들이 서비스 이용자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종교를 표명할 수가 있다면, 실천과정에서 종교를 드러내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이 무조건 국가가 종교에 무관심할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지고 다종교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상호간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정책도 가능하다는 견해⁹⁾와 상통하는 바가 있다.

위 논거의 핵심은 종교적 접근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는’ 조건이어야 할 것이므로, 문제는 사회복지사의 기술능력이다. 사회복지기관들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시작되었지만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 특히 종교로 인한, 인권차원의 법적 다툼이 생길 가능성은 많다. 보건복지부가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을 추진할 때 필자는, 복지시설에서의 종교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공식적으로 지문한 바 있다.

9) 송기춘, 「종교관련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창립세미나 자료집(2006), 49쪽.

2. 사회복지 교육에서의 종교

서구 사회복지학에는 특정종교와 상관없이도 인간의 초월적이고 영적인 세계를 탐구한 학자들이 있다.¹⁰⁾ 교육의 변천과정에서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52년도 제 1회 사회사업교육협의회에서 교육과정에 종교적인 내용을 넣을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 논의가 있었고 6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다시 80년대 중후반부터 관련연구들이 나타나면서 마침내 1995년도 사회사업교육협의회는 교과목 승인기준에서 '종교는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성의 한 요소로서 교과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실천의 내용은 사회적·문화적·인종적·종교적·영적 그리고 계층적 배경이 다양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맞는 접근법과 기술을 포함한다¹¹⁾고 밝혔다.

사회복지 문헌에 정의된 바에 의하면, 종교란 영적인 신념들(spiritual beliefs)이 특정제도와 양식(樣式)으로 확립되고, 신자들이 함께하는 공통의 의례와 교리, 수행체계를 포함한 사회화 과정이 갖추어져 있다. 영성(spirituality)이란, 종교를 정의하는 경우보다 훨씬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개 인간의 자기개발과 혁신의 잠재력인 핵심성품(core nature)을 의미하고 또는 인간이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자기초월적(transpersonal, transcendent) 차원을 의미한다.¹²⁾

10) 임은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과주: 양서원, 2005), 165-166쪽; Edward R. Canda & Leola Dyrud Furman, *Spiritual Diversity in Social Work Practice: The Heart of Helping*, 박승희·이홍구 외 공역(서울: 성균관대출판부, 2003), 제5장; Susan P. Robbins, Pranab Chatterjee & Edward R. Canda, *Human Behavior Theory* (MA: Allyn & Bacon, 1998), 12장 참조

11) Robin Russel, "Spirituality and Religion in the Graduate Social Work Education," Edward R. Canda, ed., *Spirituality in Social Work: New Direction* (NY: Haworth Press, 1998), 18쪽.

12) Maria M. Carroll, "Conceptual Models of Spirituality," in Edward R. Canda & Elizabeth D. Smith, eds., *Transpersonal Perspectives on Spirituality in Social Work* (NY: Haworth Press, 2001), 7쪽.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서 종교적·영적인 이해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여러 가지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있어 왔다. 찬성과 반대의 쟁점을 분석한 결과¹³⁾는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약 정리된다.

<표 1> 종교와 영성 연구에서의 쟁점들

	찬성의 주장	반대의 주장
기본 인식	복지실천에 새로운 도전과 강점으로 인식 영성 포괄적 관점을 사용, 종교역할 언급	종교 경직성, 종파주의 우려, 전문직 제한. 영성은 개인적 특이적 미시적
영역 상관성	종교와 영성은 인간이해에 매우 중요. 사회복지실천, 종교, 영성 상호연관 상호보완	종교와 영성 다루기, 전문직 위신 훼손. 종교, 영성, 사회복지실천 상호배타적
전문직 가치관	전문직 가치와 양립하는 영성, 다양성 존중 복지실천의 근본은 영적, 과학 철학과 양립	자기결정권 침해, 개종 권유 위험 가치중립 위배, 정교분리원칙 약화
기술 개발	개념정의를 정교화, 지식과 기능 활성화. 교육을 강화하면 기술발전이 가능	영성개념 모호, 종교와 복지실천을 결합하는 사회복지사 준비와 노력 미흡
교육 과정	교과목에 포함시키고 개발하여 전문화 교육자 참여를 확대하여 교육자 양성	기존교과목도 이미 너무 많다 교육자의 가르칠 준비가 충분치 않음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의 공통점은, 종교와 영성을 다루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고, 교육자들이 교육할 준비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제도종교와 영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사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특정종교를 권할 가능성이 있으며, 종교와 영성을 반영하더라도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윤리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기관에서의

13) Edward R. Canda & Leola Dyrud Furman, *Spiritual Diversity in Social Work Practice* (NY: Free Press, 1999), 63-64쪽.

종교적 표명은 자칫 국가가 특정종교를 지원하는 결과가 되어 정교분리의 원칙이 침해되는 것을 우려한다.

찬성론자는 종교적 다양성과 영성이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문화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것도 역차별이 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사회복지 교육과정에 종교와 영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전문직 사회복지실천에 긍정적인 강점(strength)을 제공하고, 혁신의 기회가 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립대학들이 각자의 종교전통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사회복지 현장에 유익하도록 응용된 교학이나 기술론이라기 보다는 원론적인 교의학습이 아닌가 싶다. 최근 ‘국제사회복지’ ‘문화 다양성’ 등의 교과가 사회복지학과에 개설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문화의 원천인 종교다양성도 소개될 수 있을까 기대해보는 정도이다.

3. 사회복지 실천체계에서의 종교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장을 돌아보면 사회복지사의 종교인구 비율이 약 77%¹⁴⁾라고 조사된 바 있고,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전체의 약 53%¹⁵⁾라는 통계가 나와 있다. 문제는 종교계의 비중이 아니라, 그 사업이 사회복지와 선교를 제대로 구분하는지, 정교분리의 원칙을 잘 지키는지 등을 검증하는 일이다. 검증의 책임은 국가·법인·기관·전문가들에게 일차적으로 있고 이용자인 국민에게도 감시의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에도 헌법상의 종교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관계모델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종교적이고 영적

1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기초실태보고서』(서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0), 16쪽.

15) 고경환·장영식·박승희·이혜숙·조철환 공저, 『한국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지원금 실태조사』(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123쪽.,

인 헌신을 위촉시켰다¹⁶⁾는 견해도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잠재적 이용자라고 할 국민의 종교인구 비율이 약 53%¹⁷⁾라는 점을 주목한다.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종교인구와 종교계 시설이 이처럼 많다고 하면, 음으로 양으로, 종교적 소통을 기대하지 않을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¹⁸⁾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이용자의 종교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종교로 인한 차별이나 제한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종교 자유와 평등한 권리에 관한 일반원칙으로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의 전문기술 측면에서 재해석을 하면, 서비스 이용자의 자원(resources) 가운데 하나인 종교와 그 표명에 사회복지사가 공감¹⁹⁾하고 편견 없이 수용²⁰⁾하는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실천원칙이다. 종교로 인해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의미에서 ‘종교적 자유’, 어떤 종교라도 필요하면 반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종교적 관여’[professional intervention]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얼핏 상충하는 것 같은 실천기술의 습득을 위해서, 학계는 필요한 교육과정들을 열고, 사회복지기관 즉 현장에서는 적절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필자의 한 표본조사에 의하면²¹⁾, 사회복지사(72%)는 서비스 이용자의 종교나 영성을 이해하는 것이 서비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자신과 다른 종교인의 종교적 세계를 공감할 수 있다(79%)고 하나, 서비스 이용자와 종교적 관심사를 나눈 경험은 많지 않았다(15%). 종교적 공감을 통해서 서비스를

16) Lawrence E. Ressler, “The Rel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Issues in Social Work and the Law,” in Edward R. Canda, ed., 앞의 책, 91-92쪽.

17)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2006), 32쪽, www.nso.go.kr

18)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윤리강령-기본적 윤리기준 1의2항(2007)

<http://www.kasw.or.kr>

19) 이윤로, 『사회복지실천기술론』(서울: 학지사, 2007), 38-39쪽.

20) 김혜란·공계순·홍선미 공저, 『사회복지실천기술론』(과주: 나남출판, 2007), 135쪽

21) 줄고, 「임상사회복지에서의 Spirituality 개념화를 위한 연구」(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1996), 47-51쪽.

더 잘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시도가 많지 않은 것이다. 사회복지사(51%)는 사회복지 교육과정에 종교 관련이 내용이 포함되기를 희망하였다.

사회복지사의 이러한 희망사항은 개인적 입장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사업목표에도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법인의 정관이나 관훈 등에 종교이념을 명시한 종교계 복지기관들의 경우, 사회복지사는 종교적 이념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실무자는 서비스 실천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싶은데, 기관 책임자가 우려하는 것은 오히려 실무자의 종교가 다르다거나 신앙심이 깊지 않다는 점 등인 경우가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산하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불교신자는 응답자의 50%이며 신심이 낮은 편이라는 통계와 관련해서 “종사자들의 느슨한 종교적 결속력이 종단의 포교전략과 대치된다”, 따라서 “불교적 정체성을 확립할 불교교육 프로그램 개발”²²⁾을 제안하고 있다. 문장으로만 보면, 조계종단 사회복지사업이 포교전략이라는 것이고, 사회복지사에 게도 같은 목적과업(포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예로서,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신앙성숙도가 복지기관 종사에 미치는 영향들을 조사하는데²³⁾, 기관 내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 전문성보다도 종교인으로서의 책무와 신앙성숙도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우들이 있다.

사회복지사 개인의 종교는, 종교계 기관 종사자하거나 아니거나, 그것이 사회복지 직무의 수행에 관련이 있을 때 사회복지학적인 연구의 대상이 된다. 만약, 소속기관의 기대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원만히 부합되지 못할 때,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종교적 기대를 따르지 못하는 종사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은 물론이거니와 직무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사

22) 불교사회복지연구소 기획특집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 종사자 재교육프로그램 개발관련 욕구조사결과 분석」 《불교사회복지연구》 제3호(서울: 불교사회복지연구소, 2007), 173-174쪽.

23) 장원순, 「기독교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신앙의식 연구: 기독교 교육적 관점을 중심으로」(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기독교교육전공 석사논문, 1998) 참조.

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종교적 과업의 정체성과 중요성 측면에서의 혼란은, 대부분의 종교계 복지기관들에 있어서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조직의 구성원이 자기조직에 대해서 느끼는 애착과, 책임감으로 충직하게 성심껏 근무하려는 내적 규범의 정도 등을 포함한 개념인 ‘조직 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의 요인을 조사한 연구들이 있다. 연구자들은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변수로서 ‘직무 특성’을 많이 주목하는데, 직무특성이란 직무 갈등· 과업 정체성· 직무기술의 숙련도· 업무 범위 등을 의미한다. 조직 안에서 구성원에게 주어진 과도한 역할이나 충족되지 않은 직무기대, 부적절한 직무기대 등은 조직 냉소주의를 낳게 되며, 조직냉소주의는 궁극적으로 구성원들의 조직몰입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²⁴⁾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계 사회복지조직에서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종교와 사회복지가 연관되어 있는 직무 특성에 대해서 보다 적절하고 체계적인 개입과 지도 운영이 매우 필수적인 사항이다. 일련의 직무기대와 과업들이 기관 종사자에게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려면, 모든 수준의 관계자들이 다양한 종교의 이해와 영적 반영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기관 내 사회복지사들의 종교가 무엇인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를 종교적·영적으로 잘 이해해서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이 되게 하는 사전준비와 지속적인 교육투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

III. 조사 연구

1. 조사 설계 및 방법

24) 강철희·김교성,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조직냉소주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계간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53호(서울: 청목출판사, 2003), 278-279쪽.

이상과 같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조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들의 종교와 영성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가를 실증적으로 확인코자 하였다. 또, 사회복지교육의 개선점을 제안할 목적으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을 조사대상으로 정하고 피교육생으로서의 인식과 기대를 물은 것이다. 연구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사회복지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종교·영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둘째, 사회복지사 자신에 대한 종교적·영적 인식은 어떠한가?
- 셋째, 사회복지사는 직무상 종교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넷째, 사회복지사는 종교·영성에 관한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설문지는 애초에 미국 대학의 교수와 함께 양국 대학원생들의 응답을 비교 분석하고자 만들어졌다.²⁵⁾ 당초계획은 무산되었지만, 본인은 종교계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을 포함시켜서 총 11개²⁶⁾학교의 대학원생 약 400명에게 조사지를 보냈다. 먼저 각기 해당학교에 전화를 해서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허락해준 교수와 조교들의 도움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했기 때문에 무작위표본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처음에 회수된 설문지는 총 337부였으나 부실한 응답지 등을 제외하고 남은 것이 총 317부가 되었다. 그간 우리의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종교·영성을 묻는 조사가 많지 않았음을 감안하여 설문지 표지에 종교·영성에 대한 이론가들의 개념정의를 명기하였다. 문항은 아래 <표 2>와 같이 총 54개이며 인구학적 특성에 해당하는 문항 8개와 나머지 46문항은 응답자의 인식을 묻는

25) 2000년 가을학기, 미국 Indiana University Northwest Division of Social Work의 Sandra Doe교수가 만든 영문 설문지를 번역사용. 조사시점은 오래 전이나 인식변인 등을 파악하기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 발표함.

26) 강남대, 가톨릭대, 이화대, 원광대, 동국대, 대구가톨릭대, 광주대, 전북대, 경북대, 서울대, 부산대.

내용이다.

응답은 ‘매우 그렇다’를 1점으로 하고 ‘전혀 아니다’를 10점 척도로 설계했으나, 분석시에는 역점수로 환산해서 통계처리를 하였다. 분석 도구는 SPSS 15.0을 이용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고 기타 문항들의 기술통계 값을 얻은 다음에, 응답자의 성별, 연령, 종교유무, 경력기간, 근무기관 배경, 학교 배경 등을 독립변수로 해서 T-검증, ANOVA, 요인별 상관분석 등을 시행하였다($\alpha=.05$).

<표 2> 설문지 문항 구성표

영역 구분	지표	해당문항 (총개수)
인구학적 특성	성별·연령·조직적 신자/비조직적 신자·경력기간·종교계 직장·재학 연차·학교의 종교적 배경	문1-문7, 문54(8개)
사회사업 원리와 영성의 관계	사업원리는 영적·사회복지사는 영적·종사자 영성 반영·자기영성이해 필요·종교적 종사자가 유능·종교 소속 필요·전일적 실천·종교 다루기·종교기관에 도움 주기	문8-문19 (12개)
자기 평가	종교적·영적·종교의례 중요시·자기이해 필요·직업은 영성 관련·입학 후 영적성장·종교계 근무가 편안	문20-문28 (9개)
사회복지교육 내용과 수준	종교계 기여소개·종교 다양성·다문화 이해·인간행동 이론에 포함·영성 적용기술 학습·학생의 영적 성장 지원·종교계와 일하기 학습·필수과목·선택과목	문29- 문40(12개)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영성	종교계와 협력 의무·종교기관 근무 필요·종교기관 복지사업에 공적 지원가능·기관운영에서 영성·기관별 서비스 차이·인본주의 반영·영적으로 민감한 실천의무	문41- 문53(13개)

2. 조사 결과

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아래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원 재학생인 응답자들의 연령은 26세에서 35세까지의 집단이 가장 많은 비중(42%)을 차지하고, 45세 이상인

집단의 비율(14%)이 가장 적다. 그러나 비교적 다양한 연령층이라고 생각된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65%)과 남성(35%)의 비가 약 2대 1로 나타났으며, 또 조직적인 종교단체(사찰, 교회, 성당 등)에 소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전체의 약 66%를 차지한다. 종교단체에 속하지는 않으나 특정종교를 믿는다고 한 사람도 응답자의 61%나 된다. 이 문항에서 교차분석<표4>을 해 본 결과²⁷⁾ 응답자들에게 어떤 혼선이 있었던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종교적 성향이 높은 집단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근무하는 곳이 종교계 기관인 경우는 응답자의 33%이다. 여기서 ‘기관배경’과 ‘조직적 신자’로 교차표를 분석하였더니<표4>, 종교계 기관의 근무자 가운데는 조직적 신자가 91%나 되었고, 비종교계 기관 근무자 중 조직적 신자인 사람도 54%

로 나타났다. 사회사업에 종사한 경력자 가운데는 <7년 이상>이 전체의 약 1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초보라고 할 <1년 미만>이 15%로 2위를 차지하며 경력기간이

<표3> 인구학적 특성의 빈도분석표

연 령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6세 이하	67	21.1	21.2	21.2
	26-35세	132	41.6	41.8	63.0
	36-45세	74	23.3	23.4	86.4
	45세 이상	43	13.6	13.6	100.0
	합계	316	99.7	100.0	

27) ‘조직적인 회원신자다’가 208명이라면, 나머지 109명 中에 비조직적이지만 ‘신자다’와 ‘신자 아니다’가 있을텐데, 문항 4)의 총 응답수가 119명인 것을 보고 오류를 추정하여 교차분석을 했다. ‘비조직적 신자도 아니다’는 75명이 분명한 무종교인이 아닐까? 그래서 응답자의 76%가 조직적·비조직적 ‘종교인’이라고 가정해볼 때, 2000년 <사회복지사실태조사>에서의 종교인구 비율 77%와 거의 비슷한 표본이다.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3		
합 계		317	100.0		
성 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여성	205	64.7	64.9	64.9
	남성	111	35.0	35.1	100.0
	합계	316	99.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3		
합 계		317	100.0		
비조직적 신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예	119	37.5	61.3	61.3
	아니요	75	23.7	38.7	100.0
	합계	194	61.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23	38.8		
합 계		317	100.0		
조직적 신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예	208	65.6	65.6	65.6
	아니요	109	34.4	34.4	100.0
	합 계	317	100.0	100.0	
경력기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년 미만	45	14.2	14.6	14.6
	1-2년	39	12.3	12.6	27.2
	3-4년	32	10.1	10.4	37.5
	5-6년	25	7.9	8.1	45.6
	7년 이상	50	15.8	16.2	61.8
	무경험	118	37.2	38.2	100.0
	합계	309	97.5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8	2.5		
합 계		317	100.0		
학교 배경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종립	191	60.3	60.3	60.3
	비종립	126	39.7	39.7	100.0
	합 계	317	100.0	100.0	

종교계 직장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예	87	27.4	32.8	32.8
	아니오	178	56.2	67.2	100.0
	합계	265	83.6	100.0	
결측	시스템결측값	52	16.4		
합 계		317	100.0		

비교적 다양한데, 전체적으로는 <무경험자>가 38%나 되어서 가장 많다. 현재 직장이 있다는 응답이 84%인 것을 보면 복지기관이 아니라 종교기관 종사자도 상당수 있는 것 같다. 종립학교를 다니는 응답자는 전체의 60%를 차지하였다. 자신의 ‘학교배경’과 ‘조직신자 여부’를 분석하였더니<표 4>, 종립학교 재학생인 응답자 중 조직적 신자는 75%, 비 종립학교에서의 조직적 신자인 학생은 51%, 특히 종립대학에서 조직적 신자가 아닌 학생도 25%에 달한다.

<표 4> 조직신자와 비조직신자·종교계직장·학교배경의 교차표

			조직적 신자		전체
			예	아니오	
비조직신자	예	빈도 비조직 신자의 %	82 68.9%	37 31.1%	119 100%
	아 니 오	빈도 비조직 신자의 %	4 5.3%	71 94.7%	75 100%
전체		빈도 비조직 신자의 %	86 44.3%	108 55.7%	194 100%
종교계 직장	예	빈도 종교계 직장의 %	79 90.8%	8 9.2%	87 100%
	아 니 오	빈도 종교계 직장의 %	96 53.9%	82 46.1%	178 100%
전체		빈도 종교계 직장의 %	175 66.0%	90 34.0%	265 100%

학교 배경	종립	빈도 학교배경의 %	144 75.4%	47 24.6%	191 100%
	비종립	빈도 학교배경의 %	64 50.8%	62 49.2%	126 100%
전체		빈도 학교배경의 %	208 65.6%	109 34.4%	317 100%

2) 변인별 기술통계와 요인별 상관분석

우선 각 문항별 응답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표 5>. 집단특성별 응답의 유의도를 분석한 T-검증과 ANOVA의 결과, ‘경력기간’(문항 12·20·32·39·43·48·52:유의함)을 제외하고 대부분 매우 높은 유의도를 보였다. 지면관계상 여기에 분석결과물을 그대로 신지는 않고 특기할 내용만 설명한다. 또, 요인분석을 한 결과 총 8개 요인을 얻었으나 충분산의 설명력이 66.344%인 6개 요인만으로 <표 6>과 같이 정리하고 필요한 신뢰도를 확보했다(42문항 전체 Cronbach’s α=.972). 문항별·요인별 유의도 검증의 결과는 <표 7> 뒤에서 소개한다.

<표 5> 문항별 기술통계량

문항별 질문 요약	N	평균 10점척도	표준 편차
8. 사회사업의 원리와 영성은 상호밀접한 연관 있다	314	6.61	2.488
9. 사회복지사는 일반적으로 매우 영적인 사람이다	315	5.10	2.018
10. 사회복지사의 영성은 Ct.와의 과업에서 자연히 반영된다	311	6.60	2.120
11. 효과적 과업을 위해 사회복지사 자신의 영성 알아야 한다	316	6.93	2.441
12. 영적인 사람이 대개 좋은 사회복지사가 된다.	317	5.90	2.510
13. 효과적 과업위해 더 종교적(religious)일 필요가 있다.	317	5.25	2.598
14. 종교소속은 인간 상호작용에서 더 영적이도록 도움	316	6.22	2.342

준다			
15. 종교적인 사람이 대개 좋은 사회복지사가 된다	315	5.25	2.443
16. 사회복지사, Ct.의 영성문제를 다루는데 적합해야한다	310	6.05	2.416
17. Ct.의 영성, holistic 사회복지실천에서 연구될 필요 있다.	313	6.30	2.207
18. 사회복지사, 서비스이용자의 종교문제 다루는데 적합해야	315	5.88	2.373
19. 사회복지사, 종교기관 사회봉사에 유의 지식과 기술 있다	315	6.23	2.083
20. 나는 매우 영적인(spiritual) 사람이다.	317	5.41	2.447
21. 나는 매우 종교적인(religious) 사람이다.	317	5.20	2.675
22. 나는 매우 종교적이고 영적인 사람이다.	317	5.03	2.554
23. 나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316	6.12	3.200
24. 나는 기도,참선과 성서 등 영적인 글 읽기가 중요하다	315	6.07	3.065
25. 학생은 종교, 영성에 대한 자신의 관점들 알아야 한다	315	7.06	2.376
26. 이 직업을 결정하는데 나의 영성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	316	5.36	2.890
27. 나는 사회복지석사과정에 등록 후 더 영적으로 되었다	310	4.32	2.404
28. 나는 종교계 사회복지조직에서의 근무가 마음 편안하다	312	5.30	2.750
29. 교과목에 종교기관들의 사회복지 기여를 포함해야 한다.	316	5.62	2.443
30. 교과목에는 종교계 복지기관들의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	316	6.20	2.369
31. 교과목에 다양한 종교조직들의 내용을 포함되어야 한다.	317	5.94	2.379
32. 학생은 문화다양성, 영적 체험다양성을 배울 필요가 있다	315	6.36	2.387
33. 영성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요소로 교과목에 포함 되어야	313	5.94	2.456
34. 사회복지의 종교적인 뿌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317	6.05	2.185

35. 사회복지전공자는 Ct.의 영성문제 다루는 법 배워야 한다	316	6.36	2.354
36. 전공자는 기관안에서의 영성문제 적용하는 법 배워야 한다	312	6.06	2.387
37. 교육자는 학생이 전문적 원조자로서 holistic 성장을 하도록 그들의 영성문제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	316	5.60	2.394
38. 전공자로서 종교적 기관들과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314	6.01	2.350
39. 새 교과 “영성과 사회사업실천”은 필수과목이어야 한다	310	4.80	2.566
40. 새 교과 “영성과 사회사업실천”은 선택과목이어야 한다.	313	5.90	2.516
41.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사회 종교계와 협력해야 한다	317	7.10	2.044
42. 사회복지사는 종교기관의 전통적 사회서비스에 관계해야 한다.	316	6.14	2.118
43. 종교기관의 사회복지프로그램에 유급종사자로 일해야 한다	308	6.51	2.291
44. 종교기관과 사회사업 전문직은 함께 일할 필요가 있다	315	7.09	2.000
45. 세금인 정부기금이 종교기관의 복지사업 지원할 수 있다	314	6.04	2.539
46. 사회복지기관들은 기본적으로 비영적인 조직체다	315	5.80	2.576
47. 영성문제는 사회복지기관들의 운영에 관련이 있다.	312	5.60	2.381
48. 복지기관의 방침과 절차에 영적 가치의 반영은 중요하다.	317	5.71	2.543
49. 개인문제를 원조하는 데는 세속적인 사회복지기관들이 신앙에 기초한 기관들보다 잘 준비가 되어 있다	304	5.00	1.974
50. 지역사회 문제들을 다루는 데는, 세속적사회복지기관이 신앙에 기초한 기관보다 잘 준비가 되어 있다.	302	5.10	1.956
51. 사회복지기관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서비스 실천해야 한다	306	5.30	2.236
52. 사회복지기관들은 영적 가치들을 조직적으로 구체화한 것	304	5.04	2.167
53. 기관의 정책 안에 인본주의적 원리들을 반영해야 한다.	308	7.56	2.051

<표 6> 요인구성과 그 신뢰도

요인	구성개념	소속문항(개수)	신뢰계수 Cronbach's α
요인1	영성이해 필요성	11·16·17·18·35·36·37·39·47·48·51·52 (12개)	0.946
요인2	원리와 영성관련	8· 10· 40· 53 (4개)	0.599
요인3	자기 영성	20·21· 22· 23· 24· 25· 26· 28(8개)	0.946
요인4	종교 다양성	29· 30· 31· 32· 33· 34 (6개)	0.904
요인5	종교계 협력	38· 41· 42· 43· 44· 45 (6개)	0.877
요인6	전문직의 영성	9· 12· 13· 14· 15· 27 (6개)	0.894

<표 7> 요인별 T-검증 결과

요인	연령	성별	조직적 신자	비조직적 신자	종교계직장	학교배경
요인1	***	**	***	***	**	**
요인2	*		***	**	*	**
요인3	**	**	***	***	***	***
요인4	*	***	***	***	***	**
요인5	***	*	***	**	***	***
요인6	***	***	***	**	**	
전체	***	***	***	***	***	***

* p<.05 ** p<.01 *** p<.001

위의 <표 5>를 보면 대부분이 평균 6점(10점 척도) 전후의 ‘그렇다’는 응답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평균점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은 인본주의 원리를 반영해야 한다’(7.56), ‘종교계와의 협력’(7.10)과 ‘종교계와 함께 일할 필요’(7.09) 그리고 사회복지사나 전공자가 자신의 ‘종교적· 영적 관점이나 편견을 알아야 한다’(7.06/6.93)는 문항 등이다. 가장 낮은 평균점수는 ‘석사과정 등록 후 더 영적으로 되었다’(4.32)와 ‘영성과목이 필수여야 한다’(4.80)로서 ‘아니다’의 응답이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5점 미만인 응답이 없다.

문항들의 신뢰상관이 높기 때문에 문항별 유의검증의 설명은 생략하고,

요인그룹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요인1)은 ‘사회복지실천에서 영성의 이해와 반영이 중요하므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표7>에서 보듯이, 모든 집단변인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더 긍정하고, 남성이 더 긍정적이다. 조직적·비조직적 신자, 사회사업의 경험이 있는 사람(문항별 T-검증결과)이 더 긍정적이다. 종립학교 재학생과 종교계 기관 종사자들이 더 긍정적이다. 단, 요인1)에 속하는 문항 16·17·18(사회복지사는 영성다루기에 적합해야/영성차원 연구필요/종교문제 다루기 적합해야 한다)은 근무처나 학교변인에 상관없이 모두 긍정적이다(문항별 T-검증결과).

요인2)는 ‘사회사업 원리와 영성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서비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반영된다’는 내용인데, 성별을 제외하고 모든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즉,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 신자, 종교계 근무자, 종립학교 학생일수록 더 긍정적이다. 다만 남녀의 경우는 긍정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요인3)은 응답자의 영성과 종교적 태도에 대한 자기평가인데, 전체적으로 유의도가 높고 연령, 신자, 종교계 근무자, 종립학교 학생일수록 더 긍정적이다. 단지 ‘종교의례를 중요시’하고 ‘종교와 영성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알아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요인4)는 ‘사회복지 교과목에 종교(종교계)와 영적 다양성을 포함해야 한다’인데, 모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긍정의 답을 하고 있다. 단지, 종교계에 관한 소개를 포함시키자는 문항에서는 연령별, 학교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문항별 T-검증결과). 요인5)는 ‘종교계와 협력이 필요하다’인데, 일부 문항(43·44·45)에서 연령과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긍정’인 것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긍정이다. 요인6)은 ‘종교적·영적인 사람이 좋은 사회복지사가 된다’는 문항들인데, 일부문항(12·13·14·15:학교/9:근무처/12:비조직신자)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긍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집단별로 즉, 연령, 성별, 신자여부, 근무처, 학교배경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문헌을 통해서, 필자는 우리 사회복지계가 종교와 영성의 이해를 위한 연구와 그 실천이 시급한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 점은 종교계에서도 역시 중요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그간에 종종 있었던 선교용 사회복지는 인권으로서의 종교자유와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종교계 사회복지기관이 공공 지원을 받은 복지사업을 통해서 자기 종교세의 성장을 도모한다면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개인의 종교적·문화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기관의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적·영적 관여가 필요하다. 필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종교와 영성 이해의 발전을 위하여 교과목을 신설하고 전문적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와 같은 논지에 관련하여, 사회복지전공 대학원생(사회복지 경력자 약 62%)을 대상으로 인식을 확인하였다. 첫째, 사회복지사(전공자)들은 종교와 영성에 대한 이해가 사회복지실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영적인 원리를 가진 것이며,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종교와 영성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편견을 먼저 알아야 하고, 타인의 영성과 종교에 민감한 이해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많은 사회복지사(전공자)들은 스스로 종교적이고 영적이라고 생각한다. 유능한 실무자가 되기 위하여 더욱 종교적이고 영적일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 전문직은 지역사회 종교계와 협력을 해야 하고, 종교기관에 종사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종교와 종교기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복지사(전공자)들은 종교와 영성의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별도의 교과목이 신설되거나 필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전공자)들의 인식은 대부분이 연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종교를 가진 종사자들의 경우는 확연히 더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연구자의 예상과 다르다. 즉, 교육을 필요로 하면서도 별도의 과목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것이 분명하고, 교육자가 학생의 영적 성장을 도와야 한다고 보았지만 본인이 교육과정에 들어 온 이후 영적으로 더 성장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우리 교육의 질적 성과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점이다.

사회복지학에서는 무조건 종교나 영적 주제를 가르치면 안 되는 줄 알았고, 어느 한편에서는 무조건 가르쳐 왔다. 사회복지대학마다 다양한 종교인 교수와 학생은 있지만 다양한 종교이해나 영적 민감성을 가르치는 일은 없고, 종립대학에서는 아예 특정종교만을 가르치는 것으로 안다. 종교계 복지기관 종사자의 절대수가 신자이지만 종교적·영적 지도감독을 위한 공식지침이 없다. 이 분야에 연구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종교 혹은 영적 주제를 어떻게 다루어왔는지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다. 한국인의 종교문화 전통과 현황을 고려할 때 무엇인가 침묵 속에 은폐되고 있는 것 같다. 전문가라면 아직 공론화 되지 않고 있는 이 주제들을 본격적으로 연구해서 종교계와 사회복지계가 더불어 건강한 성장을 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종교자유(freedom of religion), 정교분리의 원칙(separation of state and church: the First Amendment), 강점 관점(Strengths Perspective), 자기초월적 차원(transpersonal dimension), 상호연관성(interrelatedness), 영성 (spirituality), 종교 다양성(diversity of religion), 종교적 관여(religious intervention),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조직냉소주의(organizational cynicism)

On the Religious, Spiritual Issues in the Social Work Practice

Lee, He-Sook

There are not so many critical articles. We don't know what has happened in the social work fields with the religious, spiritual issues. There must have been something covered in silence. Maybe the religious welfare organizations have delivered social services as a missionary work, which infringes the law of religious freedom. They might misuse the public funds for their own religious expansion, instead giving real welfare services to the clients, which i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 The social work educators have not mentioned the religious or spiritual issues properly enough for their students to prepare the profession.

Now we should study on the diverse religions and the spirituality of human beings and teach them to the pre-social workers in order to enforce the principle of the law, to challenge the professional education and the social work practice itself. They in Korea have religions over the 53% of the total population. About 53% of the social welfare agencies entrusted by the government are operated by the religious organizations. 77% of social workers are religious believers. In these conditions we, whether helper or client,

have to understand sensitively the religious diversity and the spiritual experiences etc.

In relation to these issues I did a survey to the some graduate students(some social workers). They agreed 'positively' on the main issues(average 6 or so by 10 point scale) : The religious and the spiritual understanding of the clients is very important for the social work practice to give better services. Good worker must have the sensitivity of spiritual understanding his(her)own first and the clients next. Because if the worker dose not know in advance his(her) own tendency or prejudice towards the other's religious or spiritual differences, it's possible to make mistake in doing services. Social workers want to learn about the religion(role of social supporters·resources· programs etc), the skills of intervention, how to co-work with religious organizations, and so on. Nevertheless one thing, social workers don't want any new required subject in addition to the present ones.